

제207회정례회
2002.12.17(화)

검 토 보 고 서

-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전문위원 임석규

검 토 보 고 서

□ 다음은

-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- 먼저, 동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보고드리면
 - 2003년도에 신설 개교되는 12개교와
 - 소규모통·폐합계획에 의해 분교장으로 개편되는 1개교
 - 기설치되어 운영중이거나 신설되는 초등학교병설유치원 253개원을
 - 동 도립학교설치 조례에 포함시켜 운영·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.
- 주요골자로는
 - 동 도립학교설치 조례에 포함시켜 운영·관리에 적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대상 학교로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신설학교 유치원 2교, 초등학교 2교, 중학교 5교, 고등학교 3교 등 총 12개교와 (별표 1, 2)
 - 소규모통·폐합학교 업정초등학교 목계분교장
 - 초등학교 단·병설유치원 산성유치원의 252개교 등
- 금번 제출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
 - 매년 신설되거나 통·폐합되는 되는 초·중·고학교와 단·병설되는 유치원을 동 도립학교설치조례에 포함시켜 운영·관리에 적정함을 도모하기 위해 타당하게 개정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.
 - 그러나 신설되거나 기 설치되어 운영중인 단·병설유치원을 동 도립학교설치조례에 포함시켜 운영하게 될 경우,

- 예산, 결산 및 학교급식 등 관련사항을 초등학교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절차를 거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이상으로 동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